공 개

의안번호	제 25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1. 14. (제1차)

의결사항

대신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※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.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이 억 원
제출 연월일	2026. 1. 14.

1. 의결주문

대신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신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(검사기간 : 2023.4.17. ~ 2023.4.28.)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융소비자보호법')에서 정한 '적합성 원칙 위반',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에 대하여 대신증권㈜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< 붙임 1 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< 붙임 2 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○ 2024년도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4.4.18.) 심의필
- ○ 2025년도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(2025.12.10.) 심의필
- ○ 제1차 안건검토 소위원회(2026.1.8.) 심의필

<별지>

대신증권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1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대신증권㈜ : 과태료 12억 70백만원*, 과징금 3억 39백만원 부과

*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%를 감경

- 조치사유 : 적합성원칙 위반,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

- 법적근거 :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제17조(적합성원칙) 제3항, 제21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제2호, 제57조(과징금의 부과) 제1항 제3호, 제69조(과태료)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2호,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 제44조(과징금의 부과) 제4항 제1호, 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3], [별표4], 「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제3항, [별표 2], [별표 3]

2. 조치사유

가.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⑴ 적합성원칙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, 재산상황 및 취득·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대신증권은 2021.3.29. ~ 2021.6.17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7개 공모펀드 27건(가입금액 1억 32백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*,

*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

- 일반금융소비자 25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

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,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,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대신증권은 2021.3.25. ~ 2021.8.4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8개 공모펀드 78건(가입금액 13억 84백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,

- 일반금융소비자 7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,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

(붙임 1)

관계법규

1.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

□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

제17조(적합성원칙)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(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를 포함함)하는 경우에는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,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), 기명날인,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.

2. 투자성 상품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은 제외함)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

가.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

나. 재산상황

다. 취득 또는 처분 경험

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적합성 판단 기준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설명의무)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(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)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

나. 투자성 상품

1) 투자성 상품의 내용

3)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정하는 위험등급

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(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)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부당권유행위 금지)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(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2.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

제57조(과징금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수입등"이라 한다)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3.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,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,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4.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

□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

제13조(설명의무)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)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초자산(이하 "기초자산"이라 한다)의 변동성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등급
3.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

4.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 및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”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함

제44조(과징금의 부과) ④ 법 제58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말한다.

1.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: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
2. 생략

제51조(과태료) 법 제6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별표 1>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요구 기준

4.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
9.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
11.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<별표 3> 과징금의 부과기준(제44조제4항제1호 관련)

1. 기본과징금의 산정
 가. 기본과징금은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나목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 나. 부과기준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"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", "중대한 위반행위", "매우 중대한 위반행위"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 1) 위반행위의 내용: 경영진의 위반행위 지시 여부 등 위반행위의 방법, 위반행위의 동기 등
 2) 위반행위의 정도: 금융소비자 피해규모,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
 3)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 횟수
 4)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
2. 기본과징금의 조정
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대성,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, 내부통제기준·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

다만, 조정한 경우에도 기본과징금 금액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3. 부과과징금의 결정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자의 객관적인 과징금 납부능력,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,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,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제2호에 따라 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.

4.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, 기본과징금의 조정, 부과과징금의 결정,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<별표 4> 과태료의 부과기준

1. 일반기준

가.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나.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
		법인	법인이 아닌 자
다.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	법 제69조 제2항제2호	2,000	1,000
아. 법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9조 제1항제4호	7,000	3,500

□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

제12조(설명의무) ②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할 것
2. 위험등급은 원금 손실 위험(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및 손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

평가한 결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비례하여 구분할 것

3. 위험등급이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정한 위험등급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발행인과 위험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협의할 것(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)

□ 舊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(2022. 12. 8. 대통령령 제3303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)」

제11조(적합성원칙)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

2. 다음 각 목의 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

가.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대상이 되는 증권

나. 연계투자

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

③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적합성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.

1.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: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

□ 舊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(2022. 12. 8. 금융위원회고시 제2022-47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)」

제10조(적합성원칙)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영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: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할 것. 다만, 일반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어느 하나만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.

1) 거래 목적
2) 계약기간, 기대이익 및 기대손실 등을 고려한 위험에 대한 태도
3)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
4) 재산상황(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을 말한다)
5) 투자성 상품을 취득·처분한 경험
6) 연령

2. 검사 및 제재 관련

□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 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(붙임 2)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대신증권㈜

2. 제재조치일 : 2026. XX. XX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 1,270백만원, 과징금 339백만원
직원(2명)	견책 1명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⑴ 적합성원칙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의 해당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목적, 재산상황 및 취득·처분경험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대신증권은 2021.3.29. ~ 2021.6.17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7개 공모펀드 27건(가입금액 1억 32백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상향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지연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*,

* 발행인과 판매사간의 위험등급 변경 관련 확인절차 등이 정립되지 않아 변경 지연 등 위반사실 발생

- 일반금융소비자 25명에게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아니한 펀드 상품을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

<관련 법규>

1.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17조 제2항, 제3항
2. 舊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제11조 제3항
3. 舊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제10조 제1항

⑵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

□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의 과정에서 설명할 때,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여서는 안 되고,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대신증권은 2021.3.25. ~ 2021.8.4. 기간 중 비대면 판매채널에서 18개 공모펀드 78건(가입금액 13억 84백만원)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사인 자산운용사가 이들 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존 등급과 달리 변경하였음에도 변경 전 등급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함으로써,

- 일반금융소비자 71명에게 펀드의 위험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부당하게 권유하고, 실제 펀드의 위험등급과 다른 위험등급으로 펀드상품을 설명하는 등 상품설명시 중요사항인 펀드의 위험성을 거짓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

<관련 법규>

1.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제19조 제1항, 제3항, 제21조 제2호
2.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」제13조 제3항, 제9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금융소비자정책과	금융투자검사1국
연 락 처	02-2100-2631	02-3145-7036

[참고-수정의결 내용] 제25호

대신증권㈜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□ (**심의결과**) '적합성원칙 위반', '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'과 관련하여 **'과태료 1,270백만원 부과'**를 **'과태료 부과 면제'**로, **'과징금 339백만원 부과'**를 **'과징금 부과 면제'**로 수정

□ (**수정의결 사유**) 금소법 안착을 위해 제재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는 비조치의견서('21.5.26. 금융위 의결) 취지를 감안하여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('21.3.25. ~ 9.24.) 중 발생한 위반 건을 비조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제